

의안번호	2218306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 7. 15.
추계번호	26B214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1.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u><신 설> 2.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u> <u><신 설>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지정 및 국가 재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전문기관명	지정 시기	전문기관 역할	국가 재정 지원('26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2.12.26.	- 등록 보고 신고 접수 및 확인, 유의물질 등 조사 분석,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시기 설치 운영 관련업무 등	2,717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1,570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2,247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13.2.21.	- 생활주변방사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36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36
한국원자력 의학원	'22.12.26.	- 항공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 영향조사 실시	200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20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수 또는 업무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범위, 해당 업

1)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무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추가될 전문기관의 수 및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대상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은 일반적으로 저선량·장기피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피부홍반이나 방사선 화상은 통상 고선량 급성피폭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